

1 UAE Civil Code

Article	Description	Interpretation
Article 31	A mandatory provision of law shall take precedence over a contractual stipulation	어느 계약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익에 불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손해에는 정의에 따라 예방 행위, 지연을 야기하는 행위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책임 당사자는 손해를 보상하기를 거부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의 반대 조항보다 우선하는 필수 조항이므로 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야기한 지연과 같은 피해 행위로 인해 손실된 시간을 복원되어야 한다.
Article 42	No harm shall be done, nor harm done in return. Harm shall be made good	
Article 106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for an unlawful exercise of his rights. The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unlawful: a) if there is an intentional infringement of another's rights; b) if the interests which such exercise of right is designed to bring about are contrary to the rules of the Islamic Shariah, the law, public order, or morals; c) if the interests desired are disproportionate to the harm that will be suffered by others; or d) if it exceeds the bounds of usage and custom.	이는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가 불법임을 의미한다. Party 가 지연되어 Party B가 제 시간에 완료되지 못하게 하고 Party A가 시간을 시간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지연의 원인은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시간 손실의 보상은 민법 제 42 조에 따라 의무적이다. 시간 손실의 보상 거부는 고의적으로 B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Article 124	Personal obligations or rights shall arise out of dispositions, legal events and the law, and the sources of obligations shall be as follows: 1. Contracts; 2. Unilateral acts; 3. Acts causing harm (torts); 4. Acts conferring a benefit; and 5. The law	의무는 계약과 법에 따라 발생하지만, 제 31 조에 따라 법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분쟁 발생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한다.
Article 246	The contract must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its contents,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good faith. The contract shall not be restricted to an obligation upon the contracting party to do that which is (expressly) contained in it, but shall also embrace that which is appurtenant to it by virtue of the law, custom,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그러한 각 의무가 법의 요구 사항 (제 31 조) 및 성실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 수행된다.

1 UAE Civil Code

Article	Description	Interpretation
Article 248	If the contract is by way of adhesion and contains unfair provisions, it shall be permissible for the judge to vary those provisions or to exempt the adhering party therefrom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justice, and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shall be void.	당사자가 준거법에 따라 의무를 회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계약 조항은 불공정한 조항이며 판사는 그러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상대방을 면제 할 수 있다. 법에 구속되지 않는 계약에 따른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
Article 267	If the contract is valid and binding, it shall not be permissible for either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resile from it, not to vary or rescind it, save by mutual consent or an order of the court, or under a provision of the law.	그러나 계약 조항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계약의 해당 부분이 유효하지 않으며 판사가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Article 283	Harm may be direct or consequential. If the harm is direct, it must unconditionally be made good, and if it is consequential there must be a wrongful or deliberate element and the act must have led to the damage.	손해는 직접적이거나 결과적 일 수 있다. 손해가 직접적이라면, 무조건 보상되어야 하며, 피해가 결과적이라면 부정적이거나 고의적 인 요소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Article 284	If the harm is both direct and consequential, the rules relating to direct harm shall apply.	손해가 직접적이며 결과적일 경우 직접적 손해와 관련된 규칙이 적용된다.
Article 287	If a person proves that the harm arose cause in which he played no part such as a natural disaster, sudden incident, force majeure, act of a third party, or act of the person suffering harm, he shall not be bound to make it good in the absence of a provision of the law or an agreement to the contrary.	천재 지변, 갑작스런 사고, 불가항력, 제 3 자의 행위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위와 같이 자신이 해를 끼치지 않은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 된 경우, 그는 법의 규정이나 반대의 동의가 없을 때 그것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Article 290	It shall be permissible for the judge to reduce the level of indemnity or not to order indemnity at all if the person suffering harm participated by his own act in bringing about or aggravating the harm.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데 자신의 행동에 참여한 경우, 판사는 손해 배상 수준을 줄이거나 배상을 명령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1 UAE Civil Code

Article	Description	Interpretation
Article 291	If a number of persons are responsible for a responsible act, each of them shall be responsible in proportion to his share in it, and the judge may make an order against them in equal shares or by way of joint or several liability as between them.	다수의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경우, 각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판사는 그들과 동등한 지분 또는 연대 책임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rticle 292	In all cases the compensation shall be assessed on the basis of the amount of harm suffered by the victim, together with loss of profit, provided that that is a natural result of the harmful act.	모든 경우에, 보상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손해 행위와 이익 손실과 함께 피해자가 겪는 손해량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rticle 295	The compensation shall be assessed in money, but provided that the judge may,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upon application of the victim, order that the plaintiff be restored to his former position, and he may also order that a specific act connected with the harmful act be performed by way of making good.	보상은 돈으로 평가되지만 판사는 상황과 피해자의 적용에 따라 원고를 이전 직책으로 복원하도록 명령하고 유해 행위와 관련된 특정 행위는 보상되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다.
Article 296	Any condition purporting to provide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a harmful act shall be void	계약 기간이 계약 당사자가 유해 행위의 결과에서 면제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Article 297	No claim for compensation arising out of a harmful act shall be heard after the expiration of three years from the day on which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occurrence of the harm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it. No claim for compensation shall be heard in any case upon the expiration of fifteen years from the day on which the harmful act took place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유일한 시간 제한은 위의 내용으로 유해 행위가 발생한 후 15년 이상 또는 피해자가 피해 및 신원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상 동안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의 유해 행위에 대한 통지는 청구의 시작일로 간주된다. 청구가 시작되면 청구가 해결 될 시간 제한이 없다.

1 UAE Civil Code

Article	Description	Interpretation
Article 368	Set-off is the satisfaction of an obligation owed to the obligee by an obligation owed by him to the obligor.	상계는 채무자에게 부여된 의무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Article 473	A right shall not expire by the passage of time but no claim shall be heard if denied after the lapse of fifteen years without lawful excuse, but having regard to any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hereto.	권리는 시간이 지나도 만료되지 않지만 15 년이 지난 후에도 합법적인 변명없이 거부 되더라도 이에 관한 특별 조항을 고려할 경우 어떠한 주장도 듣지 않는다.
Article 487	(1) it shall not be permissible to waive a time-bar defence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raise such defence, nor shall it be permissible to agree that a claim may not be brought after a period differing from the period laid down by law. (2) it shall be permissible for any person having the competence to make dispositions in respect of his rights to waive the defence, even by way of implied waiver, after the right has been established, but provided that such waiver shall not be effective in respect of obligees if it is made so as to cause them detriment.	계약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과 다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rticle 878	The contracto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his act or work whether arising through his wrongful act or default or not, but he shall not be liable if it arises out of an event which could not have been prevented.	계약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또는 불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가 막을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가 작업을 늦게 완료하면 고용주에게 초래 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계약에 명시된 손해 나 처벌을 지불 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적 Issue에 대한 Position

Liquidated Damages in UAE

- ✓ UAE Civil Code 390(1)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법 390(2)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실제 입은 손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계약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rticle 390

(1) 계약 당사자들은 본 법률에 따라 해당 계약 혹은 추후 합의를 통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정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하여 해당 합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 ✓ UAE 법원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민법 390(2)조에 따라 법원이 재량에 의해 직권으로 사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의 액수를 감액해왔음을 알 수 있다.
- ✓ 또한 UAE 법무부가 발간한 Official Commentary을 보면 390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해당 배상액이 실제 손해액과 상이한 경우 판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요청 시 손해배상액이 실손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다. 이는 보상(compensation)은 실제 손해(actual loss)와 동일해야 한다는 샤리아 원칙(Shari'ah principles)에 따른 것이다.”
- ✓ 이에 따르면 UAE 법원이 약정 손해배상액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나, 증액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 LD 금액의 이러한 확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이 Claimant에 있는 것과는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청구하면 상대방도 반박하거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Limitation of Liability in UAE

- ✓ 민사상 책임
계약당사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한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 ✓ 불법행위상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그 책임한도가 제한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상 책임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UAE민법 296조는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상 책임한도는 매우 광범위하고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한 클레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제한된다.
- ✓ Decennial Liability
UAE민법 880조는 “시공 및 감리업체는 건축물의 전체 혹은 부분적 파손에 대하여 10년간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가지며, 해당 파손이 토지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혹은 발주처가 그러한 결함을 감수하고 해당 공사를 승인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들이 건축물의 존속 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도록 의도한 경우가 아닌 한, 이같은 연대책임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조항에서의 10년 기간은 건축물 완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Decennial Liability는 강행규정으로써 계약당사자들은 880조의 Decennial Liability를 배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관련하여 UAE민법 882조는 “시공 및 감리 업체의 Decennial Liability를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합의는 무효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적 Issue에 대한 Position

Concurrent Delay in UAE

- ✓ UAE 민법 291조는 판사(또는 중재자)가 동시발생 공기지연과 관련해 책임을 당사자 간에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의 기간과 관련하여 본 조항에 따라 공기연장 및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Article 291

If a number of persons are responsible for a responsible act, each of them shall be responsible in proportion to his share in it, and the judge may make an order against them in equal shares or by way of joint¹ or several liability as between them.

- ✓ UAE 민법 106조는 법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만약 발주자가 공기지연을 초래하였고 엔지니어가 후에 이에 대한 공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발주자가 향후 시공자의 공기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이 본 민법 106조와 246(1)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Article 106

A person shall be held liable for an unlawful exercise of his rights

- ✓ UAE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계약서들은 합의된 사유들로 인해 공기지연이 초래되었다면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ime Bar in UAE

Article 880

1. 계약상의 대상(subject matter)이 설계업자가 만든 도면에 따라 그의 감독하에 시공자가 건물 또는 구조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업체와 설계업자는 시공된 건물 혹은 구조물의 전체 혹은 부분적 붕괴 (collapse) 및 건물의 안정성 및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defect)에 대하여 해당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0년간 연대책임을 지며 발주처 에 배상의무를 가진다.
2. 상기 배상의무는 해당 붕괴 혹은 하자가 토양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주 처가 하자를 보유한 건물 혹은 구조물의 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3. 10년 기한은 프로젝트 인도 시점부터 개시된다.

Article 883

모든 배상관련 청구는 붕괴 혹은 하자의 발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Case No. 267 of Year No. 17 in the Civil Circuit

프로젝트인도시점 후 10년 이내에 하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피고 (시공업체)를 상대로 한 클레임 제출기한은 하자 발견 시점으로부터 3년째인 1989년 12월 8일까지 이다. 하지만 발주처는 1992년 11월 13일 이전까지 아무런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고, 제883조에 따라 3년 제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클레임은 "Time Bar 조항"의 적용을 통해 더이상 진전이 될 수 없으며, UAE 연방대법원은 민법 제883조에 따라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